

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 프로그램 참여기업 안내

국민취업지원제도란 취업을 원하는 분들에게
취업지원 서비스와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'한국형 실업부조' 제도입니다



01

참여 기업 신청대상

신청대상

- ☑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
*단 벤처기업, 지식서비스산업, 문화콘텐츠산업 등은 5인 미만 기업도 참여 가능
- ☑ 대·중견·중소기업, 공공기관, NGO, 사회적기업등

참여제한 사유



- ☑ 소비·향락업 등(부동산, 유흥, 노래연습장, 비디오, 복권, 기타 캐블링·베팅업 등)
- ☑ 인력공급업·파견업 등 사업주가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지 않는 기업
- ☑ 임금체불·고용보험료 체납 및 중대재해발생기업
- ☑ 부정행위 등으로 지원금 지급 제한 중인 사업주 및 중대한 사회문제 야기한 기업 등
- ☑ 참여 신청일 1개월 전부터 인위적인 근로자 감원 이력있는 사업주(인턴형)

02

참여 절차



프로그램
참여 신청
(운영기관)



적격심사
결과통보
(운영기관)



지원
약정 체결
(운영기관)



참여자 연계·
표준협약 체결
(참여자)



수당·임금 지급
(참여자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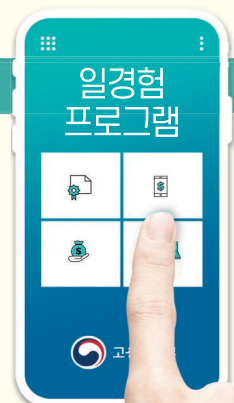
지원금 신청
(운영기관)

03

신청방법

온라인 신청 또는 일경험프로그램 운영기관을 통해 신청가능

국민취업지원제도홈페이지 접속 ▶ www.work.go.kr/kua



일경험 프로그램은

수급자의 직장 적응능력·직무향상을 지원하여
일경험 프로그램 종료 후 채용가능성을 제고하는 프로그램입니다.



04

일경험 프로그램 유형 및 지원 수준

	체험형(직무 체험)	인턴형(직무 수행)
참여자 지위	일경험 수련생, 견습생	근로기준법상 근로자(4대보험 가입)
지원기간(시간)	- 최대 30일(사업장 휴무일 제외) 1일 4시간(1주 20시간) 이내 원칙	- 최대 3개월 1주 30~40시간 내 협의하되, 1일 8시간
직무내용	- 기존 근로자 수행업무 보조 - 기초적 사무 보조, 사회서비스 보조 등 - 위험·유해한 업무는 배제	- 직무역량 향상에 도움될 수 있는 직무 - 취업에 직접 연계 가능하도록 직무 수행 - 단순·반복적인 직무 등은 제외
지원 내용	1인당 식비·교통비 등 실비(1일 2.1만원) 1인당 멘토링 수당(1인당 10만원)	1인 인건비 최대 월 1,822,480원 1인 멘토링 수당 월 10만원 ※ 참여자 임금은 기업에서 별도 지급
모집 규모	고용보험 피보험자(직전 월말기준) 수 기준 40% 이내 모집 가능	- 고용보험 피보험자(직전 월말기준) 수 기준 40% 이내 모집 가능 ※ 20~40% 모집시 체험형 10~20% 연계필수



05

일경험 프로그램 운영기관

사업지역	선정기관	연락처	사업지역	선정기관	연락처
서울 전지역	(주)한국직업개발원, (사)국제경영원	070-4373-5013	광주·전남	(사)광주경영자총협회	062-654-3426
인천·경기북부 강원 철원군	(주)지에스씨넷 파주지점	032-426-1949	전북	(주)베스트인	063-714-3695
경기 남부	케이잡스(주) 부천지사	032-351-8852	대전·세종 충북·충남	(사)대전충남경영자총협회	070-4066-4433
부산·경남	퍼스트인잡(주)	051-714-2480	제주	제주경제통상진흥원	064-805-3399
울산·창원	케이잡스(주) 창원지사	052-294-9865	강원권 (철원제외)	사회적협동조합 희망리본(춘천)	033-256-8816
대구·경북	(주)지에스씨넷 구미지점	1811-7629			